

○ 국토교통부공고(입법예고)제2024-604호(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)

관보 제20730호(2024. 04. 15.)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517호(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4년 04월 19일

국토교통부 장관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<p>2. 주요내용</p> <p>가. <u>드론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 규정(안 제9조제1항)</u></p> <p>나. <u>관련기관 및 의무보험 판매자 등과 드론 정보체계 정보를 공유하거나 필요시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9조제2항)</u></p> <p>다. <u>드론법 제3조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(안 제9조제3항)</u></p> <p>가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식 규정(안 제8조의2)</p> <p>나.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절차 규정(안 제12조의2)</p> <p>시·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, 변경하려는 경우에</p>	<p>2. 주요내용</p> <p>가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식 규정(안 제8조의2)</p> <p>나.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절차 규정(안 제12조의2)</p> <p>시·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, 변경하려는 경우에</p> <p>다. 드론공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규정(안 제12조의3)</p> <p>드론공원 지정 요건 및 해제 사유와 지정 신청서 검토 기간 및 결과 고시 등 제반 절차 규정</p> <p>라. 드론공원의 지정·변경 등에 대한 신청의 접수·확인·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(안 제20조제1항 제4호의2)</p>	

<p>도 동일하게 적용</p> <p>다. 드론공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규정(안 제 12조의3)</p> <p>드론공원 지정 요건 및 해제 사유와 지정 신청서 검토 기간 및 결과 고시 등 제반 절차 규정</p> <p>라. 드론공원의 지정·변경 등에 대한 신청의 접수·확인·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(안 제20조제1항 제4호의2)</p>		
--	--	--